

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

[시행 2007. 6.30] [대통령령 제20118호, 2007. 6.28, 제정]

법무부 (법무심의관)02-2110-3164~5

「이자제한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.

부칙 <제20118호, 2007.6.28>

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